

# ‘건축 설계경기 및 감리제도의 나아갈 길’

일 시 | 2010. 11. 17(수)

장 소 | 건축사회관 8층 임원실



## Part 1. 건축 설계경기

**최동규 :** 반갑습니다. 오늘 좌담회는 ‘건축사지 500호 특집 좌담회’로 ‘건축설계경기 및 감리제도에 대한 좌담회’입니다. 건축사지가 이번 12월에 500호가 됩니다. 오늘 좌담회는 유인물에 있는 원고에 대해 강원대 박경립 교수(존칭 생략)와 동아대학교 김기수 교수가 설계경기와 감리제도에 대해 발표 해주시고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좌담회를 위해 강원대 박경립 교수와 동아대학교 김기수 교수가 건축 설계경기와 감리제도에 대해서 건축사지에 게재됐던 40여 년간의 자료를 읽어보시고 원고를 써주셨습니다.

그럼 박경립 교수 먼저 발표를 해주십시오.

**박경립 :** 건축 설계경기가 과연 이 땅에 어떻게 정착했고, 어떻게 발전했나 하는 것을 잠깐 들여다 볼 기회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숙제가 좀 버거웠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외국의 건축설계경기에 관련해서 나온 칼럼이나 책들도 살펴보니 역시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건축설계경기가 갖는 가능성과 한계는 다 같이 갖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건축설계경기를 통해본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니까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선의 시대적 적정성과 심사

의 검증성 문제가 어디나 주제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선작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좋은 작품이 뽑혔다는 것이 진짜 실현 가능한가? 아시다시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경우 기술 축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실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 어려운 과정과 무리한 시도 때문에 또 기술적 축적이 되어서 성공을하게 됩니다.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을 선정했을 때 드는 비용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점이 발주처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자기들끼리 하다가 국제현상으로 돌리는 순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을 얻게 되고 전혀 다른 충격을 받아서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 국제현상의 묘미중의 하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한편 신진 건축가의 등용이 설계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심사과정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당선 작가의 권리, 건축주 요구 사항의 적절성은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뽑아 놓고 마음대로 다 바꾸어 버리는 것을 지적했는데, 외국도 결국 그런 일들이 많이 표출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목 읽어본 결과 역시 문제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나 외국이 갖고 있는 것이나 같은 양상인데, 정도가 틀린 것 같습니다.

결국 선진국으로 갈수록 심사위원의 권위가 갖춰지고, 그 다음에 심사 과정이 투명하고 그 다음에 건축가가 선정되면, 그들의 권리 최대한 보장하려고 애쓰고 있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 할 때는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의 무리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건축가도 건축주한테 할 말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단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건축 설계경기에 대한 문제는 1950년대 60년대 다 일어났어요. 1972년에 3단체 사람들이 모여서 설계경기 어떻게 할 건가 규칙을 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건축설계경기 발생 시 건축주에 자문하는 등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써서 만들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63년도 그 UIA 현상응모에 따라서 한국건축가협회에서 규정 제정할 것을 발의하고 계속적으로 노력 한 것이 72년에… 9년 걸려서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국가가 내세운 것은 '전통을 이어라'하는 것이 강력한 주제였습니다. 60년대의 주제에는 '전통의 부활'이었습니다. 전통에 대하여 조금은 국수적인 의미에서 형태에 집착하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다음에 70년대 들어서니까 조금 달라졌습니다. 증권거래소, 은행, 종합전시장, 제2정부 청사 등등 우리가 산업화 초기에 들어선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컴퓨터에, 거의 다 공공기관들이었고… 그다음에 주제가 되었던 것이 역시 전통의 계승과 현대화 같은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독립기념관과 세종문화회관입니다.

**이 글을 정리하면서 인터뷰를 해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신 사회로 되어가고 있구나… 일동 당선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이 심사과정이 공정했다고 보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간 사람은 공정 했는데, 시작부터가 불공정 거래가 시작됐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불신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보상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 설계권리를 시작할 때 조금 더 명쾌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규정이 위반 됐을 때나 설계를 다시 했을 때는 설계 다시 한 거에 대해서 비용지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낙선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참가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

80년대 들어서니까 도시차원으로 설계경기가 바뀌더라고요. 을지로 2가 재개발, 목동 신시가지 개발 등등. 그래서 건축에서 도시로 확장되어, '아 이게 우리나라가 설계경기만 봐도 움직임을 대충 알 수 있구나' 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88올림픽 있고, 그러니까 역시 문학적 기념비적 설계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역시 이때도 주제는 항상 '전통의 현대화'라는 것이 달려있었습니다.

90년 들어서니까 박물관 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 지방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문화화관부터 시작을 해서 도서관, 복지사회구현이라는 것들과 설계경기들이 확 늘어나고, 역시 그 지지체와 관련해서 골고루 잘사는 지방에 문화시설들. 즉 생활편리 문화시설들이 건축설계경기가 되면서 이제 양상이 틀려집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과 자체가 하는 것과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주제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절약, 자연환경과의 조화, 그런 네트워크의 실현, 도시와 자연의 제고, 자연 친화, 인간중심, 환경 친화적 생태, 환경 친화적 건축물 부여 등등. 이렇게 환경친화적이란 단어와 지속가능(Sustainability)에 대한 것들이 계속 되고,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스마트빌딩, 그린 클리너 같은 지속가능한 환경보존과 IT산업들이 합해져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들을 하나로 그리면서 주제어들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근대적 설계경기의 출발은 영국 건축학회가 1872년에 제정한 설계경기규칙이 근간이 되어서 미국으로 전파되고, UIA 국제 설계 경기 기준이 1956년에 정립됩니다. 그다음에 1978년에 개정이 되고… 한국건축설계경기 기준 제정은 1972년에 되고, 84년에 개정되고, 99년에 개정이 됩니다.

이 글을 정리하면서 인터뷰를 해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신 사회로 되어가고 있구나… 일

많은 프레젠테이션, 너무나 많은 모델은 획기적으로 줄여서 아이디어 설계경기를 많이 활용하고… 기술적 실현을 위해서 시스템을 좀 더 갖춰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공공발주 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인 발주도 공공발주를 자꾸 닮아가서 건축사들을 힘들게 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공공발주가 변화해야 민간발주도 서서히 같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최동규 :** 우리는 사실 대형 공공경기에 참여해보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이렇게 박 교수의 설명 들으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좌담회로 진입하기 전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참여하시면서 현재 기 발췌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좌담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그것도 좀 미리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김용미, 전영철, 조익수 건축사 세 분 중에 한분이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전영철 :** '공공건축물의 품격향상' 이란 제목을 가지고 발주제도의 문제점과 발주제도의 개선점. 그 발주제도 중에서 현상공모전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저희 셋이 가서 자문을 해줬습니다. 아우리(AURI, 건축도시공간 연구소)의 염철호 박사가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은 방금 전 우리 박 교수가 이야기하신대로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일단 공정해야 된다는 공정성하고, 두 번째는 심사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투명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심사위원에 의한 정확한 심사의 개념인데, 정확한 심사의 개념 속에 심사위원의 선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부녀회관의 그 부녀자분도 들어가고 공무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조를 하는 사람이나 설비를 하는 사람들, 조경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실제적인 심사는 이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그 의견을 참조할 뿐이지 계획하는 사람에 의해서 철저하게 토론에 의해 해야 되고, 심사위원은 사전에 공개 돼야 되고, 심사결과도 철저하게 공개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김용미** :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가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건축사들이 자신들을 위해 제도개선 해달라는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된 발주제도의 궁극적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것을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생겼지만 발주제도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국토부에서 문제점만 알면 고쳐주겠지'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 건축계 전체가 나서서 끊임없이 잘못된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일선 공무원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조달청 건축담당자들과 토론했을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현상설계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제 알 사람은 다 아는데 왜 고쳐지기가 어려운지 조달청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공개적인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조달청이 가장 큰 발주기관이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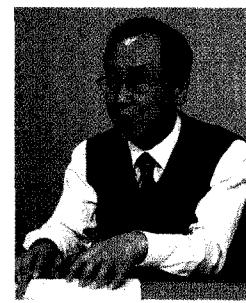
**박경립** : 그런데 이 발주제도 정리하는 것을 대통령이 하시나요?

**전영철** : 모르시지요. 목표는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으로 잡아놓고, 이 품격이 자꾸 월등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질문을 던지고,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발주제도다. 이렇게 물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발주제도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현상 공모전 설계공모전에 대한 것도 그 속의 대안들입니다. 지금 말씀 드렸던 세 가지 문제점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설계 공모전에 레벨에 따라서, 방금 전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출물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간이 공모전의 형태를 좀 많이 집어넣는 것까지 제안을 해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보고서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규** : 네, 알겠습니다. 대충 이해했습니다. 뭐 특별히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조익수 건축사부터 본인이 계시는 사무실은 공공건축 설계경기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셨을 텐데, 또 아예 참여도 못하는 사무실의 문제점하고 다를 텐데 조익수 건축사가 생각하는 공공건축 설계경기 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중요한 것부터 위계를 정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조익수** : 우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다뤘었던 그 설계경기 3단체에서 제안 했었던 내용들을 말씀 드리죠. 우선 첫 번째, 박경립 교수

가 말씀하셨듯이 심사에 대한 신뢰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래에 와서 설계경기심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도의 개선에 앞서 심사위원은 공정성에 참여자는 결과를 받아드리는 자세에 상호 노력함이 문제해결의 우선 과제로 봅니다.



조익수 건축사 (토론자)

I (주) 엔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심사에 전문가의 참여입니다. UIA의 기준에서도 건축가, 도시계획가 등의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듯이 대학 교수들보다는 실무를 하셨던 분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두 번째는 참여하는 전문가 인원수도 15명에서 UIA기준과 마찬가지로 심사위원은 7명 이내의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심사위원 중 설계계획 전문가의 구성 비율을 높이고 계획분야가 아닌 공무원, 엔지니어링 분야의 심사 참여를 최소화 하여 주로 계획이나 디자인의 평가에 의해 심사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설계경기운영규정을 바꾸면서 턴키설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전체심사위원의 반 이상을 참여할 수 있게끔 규정을 이미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인원수와 전문가의 구성 비율은 가장 현안적으로 남겨져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기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당일 새벽 또는 전날 저녁에 위촉, 다음날 당일의 설계안 비교 검토와 평가로 당선작을 선정하는 일정으로는 설계안을 구상,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자하여 제출하는 설계자의 노력에 비해 대상 건립부지의 현장 조건 검증 없이 도면에의 비교분석만으로는 충실히 평가로 볼 수 없어 좀 더 심사의 평가기간을 늘리거나 사전에 심사위원을 위촉 평가전에 충분한 설계안 평가기간을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논의하였습니다.

설계지침의 명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주처가 요구하고 있는 건립 목적과 방향이 명쾌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으면 결국 심사위원들 개인적 판단에 의해 발주청의 의도와 달리 선정되기도 하여 설계지침의 구체적 표현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은 UIA규정에서도 있듯이 한 사람의 PM이 프로젝트가 처음 선정 될 때부터 참여하여 지침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검토,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적정성 검토, 심사위원 구성하며, 전문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하였습니다. 다만 PM은 심사를 할 때만큼 심사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침의 불명확성 이런 것들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려면 이런 민간의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를 통해서 설계경기의 공정은 확보 되리라 봅니다.

**전영철** :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지침에 따라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심사위원이 지침서를 안보고 자기 임의로 판단해

서, 지침 무시하고 해서, 거꾸로 시행자 측에서 작품을 관리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경우도 지적이 되었죠.

**최동규** :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에 말씀하신 신뢰 회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지침이니 뭐니 그것은 디테일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뢰 회복은 심사위원이 사전 공개 되었을 때부터지요. 심사위원을 모르면 그것부터 신뢰가 없게 되지요. 심사위원명단이 공개되면 '아 그 사람들 참 괜찮다' 했을 때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 신뢰는 과정에 대한 신뢰, 인간에 대한 신뢰 등 이런 것이 포함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신뢰회복 말고 또 말씀하실 것 또 있으세요?

**조익수** : 좋은 제도라 해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설계경기의 규정이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되려면 현재와 같이 규정으로 하기 보다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의하거나 건축 기본법에서 설계경기를 제도적으로 규정, 운영토록 건의 하였습니다.

**김용미** : 지금 박경립 교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가가 지침작성에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박물관 같은 상징적인 건축물에 대한 현상설계와 주민센터 같은 일상적인 건축물에 대한 현상설계의 목표가 다른데, 설계경기지침을 보면 상징성을 주문하지 않는 지침은 없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앞서 했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설계지침을 만들다 보니 지침이 일반적이고 정확하지 않을 때가 태반이다. 프로젝트에 따라 제출물도 달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CG조감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감도 대신 간단한 모형으로 대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전문가가 지침 만들 때 참여하면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목표를 달리 정하고 제출물도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영철** :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현상공모전에 작품을 내면 배치계획, 외부공간계획을 보지 않습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배치계획을 보고, 디자인 보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맞춰서 내부 공간구성을 하는데, 문제는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하는 방향이

근래에 와서 설계경기심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도의 개선에 앞서 심사위원은 공정성에, 참여자는 결과를 받아드리는 자세에 상호 노력함이 문제해결의 우선과제로 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서 들어가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심사에 전문가의 참여입니다. UIA의 기준에서도 건축가, 도시계획가 등의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듯이 대학 교수들보다는 실무를 하셨던 분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두 번째는 참여하는 전문가 인원수도 15명에서 UIA기준과 마찬가지로 심사위원은 7명 이내의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심사위원 중 설계계획 전문가의 구성 비율을 높이고 계획분야가 아닌 공무원, 엔지니어링 분야의 심사 참여를 최소화 하여 주로 계획이나 디자인의 평가에 의해 심사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최동규** : 알겠습니다. 설계경기 전 과정이 법으로 제정되어 강제적인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네요.

**박경립** : 지금 조 건축사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설계지침의 명확성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설계지침의 적절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60년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을 정부가 주문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심사위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심사위원을 처음에 미리 선정하고 공개하고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가는 지침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서 지침의 적절성이 명확히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계하는 사람도 심사하는 사람도 나중에 받는 사람도 서로 도움이 되는데, 발주처의 입장에 서서 전체로서의 도시와 건축, 시민과 건축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얼마만큼 돋보이게 하는 것인가만 주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서 반발하는 경우도 꽤 많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침이 사실은 간단한 항목이 아니고 지침을 작성하는 것에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의 초기부터의 참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부 공간계획은 뭐 어차피 수정 될 것인가 하고 전혀 거의 안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외부 공간계획, 배치계획과 건축문화 외형 디자인 정도만 중점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 자체가 심사 시간 자체가 워낙 짧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한 3시간 내에 대부분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거니까. 내부 공간계획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민고민해서 만든 내부 공간계획 같은 것이 별로 심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심사 방법인가. 그래서 아까 대부분 우린 OX 심사를 하잖아요. 여기서 뭐 몇 작품 떨어뜨립시다. 그래서 OX 심사를 하거나 그하는데 심사 방법도 각 공간마다, 외부 공간이면 외부 공간, 내부 공간이면 내부 공간, 또 외형 디자인이면 외형 디자인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점수에 의한 심사방법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미** : 그런데 그것은 심사위원의 수준문제 입니다.

**최동규** : 공공건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건축계의 큰 잔치인데 대문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막상 선정되어서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은 엄두도 못내는 그룹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인수 건

축사의 생각도 말해보시죠?



박인수 건축사 (토론자)

I (주)파크아이즈 건축사사무소

박인수 :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경우를 보니, 지금 사무실을 개업해서 한 12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일찍 시작을 하게 된 경우죠. 지금까지 현상설계 전적을 굳이 말하자면, 32전 28패 4승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우는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거의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상 프로젝트가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잘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현상설계를 안하면 좋은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도 없어지니, 이게 안할 수 도 없고…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는 제가 시간이 좀 지나, 최근 들어서는, 현상설계의 심사 혹은 설계지침서 기준심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최근에 여기 나와 계시는 김용미 건축사하고 지침서 심의도 했는데요. 조금 전 박경립 교수가 너무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서 그 내용에 저는 100% 동의하고요. 추가해서, 설계 지침서가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해 조금 더 확 와 달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노베이션을 하는 현상설계가 있었고요. 지침서 심사를 하러 갔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굉장히 큰 건물을 리노베이션하는데, 리노베이션을 하려다 보니까 기준 구조나, 기준 상황들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 대한 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들이 설계 진행하면서 결정하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상황 발생 되는 게 설계자한테 책임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적어도 예산 관련해서 설계자가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적어도 이런 유의 현상을 하기 전에 리노베이션을 할 만한 건물인지 아닌지 정도는 먼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매우 부정확한 근거를 갖고 진행하게 된 것 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설계자가 설계를 하게 될 때, 설계범위가 매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설계자는 그 업무 범위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 리스크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펄쩍 뛰었죠.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이미 일이 진행되어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리노베이션 할 만큼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하부에 인프라에 대한 현황도 부정확했어요. 그래도 그건 예산은 또 잡아놨다고 합니다. 딱히 2천만 원. 그런데 그게 2천만 원이 될지 4천만 원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또한 설계의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컸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있는 지침 항목 중에 하나가 '라이프사이클 코스트'라는 게 있어요. 또, '밸류 엔지니어링'을 하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사실은 많은 공공에서 발주할 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데, 실상은 국내에 쓸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 좋다는 것 그저 집어넣은 거고, 다 외국 기

준을 가져다 쓰는 것인데요. 한국에는 하나도 안 맞아요. 물론 몇몇 아이템에 대해 업체마다 일부의 기준을 갖고 있지만, 표준화된 내용은 없다는 거죠. 결국 일단 많아지고, 평가도 못하고, 얼마나 실효가 있는지도 몰라요.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BIM 이죠. 이것도 기준 없어요.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쓰이는지도 몰라요. 지침서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침서에 있으니, 관련 업체 끼고 그냥 또 그걸 한다고 머리를 둘러 싸매고 하고 있는 거죠. 장황하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결국 현상설계에서 이 지침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나는 것은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사실 발주자는 지침서를 내주고 손을 떼도 되요. 그 만큼 정확하게 써져야 한다는 거죠. 발주처에서 내가 원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매우 중요 합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전 그 리노베이션 현상은 리노베이션이므로 분명히 저희 건축사 설계요율에는 설계비에 20%를 추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상 포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국토해양부 고시에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물었더니, 그러면 자기네 예산심의에서 잘린답니다. 그럼 우리는 공공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현상설계에서 중요한 지침서가 발주위주로 기획되는 게 문제입니다. 만일 이 지침서를 민간에서 작성한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만일 지침서가 잘못되며, 공공에서 민간이 만든 지침서를 그냥 두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는 기획과 지침서가 모두 공공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운영한다면, 사실 설계자 대신 기획 시부터 많은 문제가 거론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회적 비용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최동규 : 리노베이션 건만 말씀하는데요. 다른 공공설계경기 혹은 참여했던 건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박인수 : 최근에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 프로젝트만 이야기했나 봅니다. 큰 이야기 보다 조금 작게, 실질적인 이야기 몇 개 더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현상설계의 관련 '불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심사과 정 투명하고, 지침 투명'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도 많이 해서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를 느끼진 못하고요. 저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려 합니다. '불신'이라는 게 어떤 상황을 놓고 그 상황을 믿을 만하나 그렇지 못하나에서 믿을 수 없을 때도 불신이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소통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변형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언제나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수정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그것은 불신으로 갈 수 밖에 없죠. 제가 최근에 어떤 건축사분을 인터뷰 해봤더니, 어떤 현상설계 당선이 되었는데… 100원에 짓는 건물이라고 가정해두죠. 그런데 설계 당시에 없었던 해수인입장치를 당선 후 설계 과정 중에 집어넣게 되었네요. 그런데 그 상황은 현상설계 당시의 예산에 안 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

예산을 발주처가 빠트린 거니까 그것은 예산을 잡은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된데요. 실제로 업무에서 그걸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한 후에 공공에서 오히려 설계자한테 사정을 하는 거죠. “이거 좀 넣어 달라” 그런데 설계자는 한국 계약상 ‘을’이잖아요. 끝까지 안 넣어주면 일이 진행 안 되고, 또 관련된 사람이 다치게 되고, 넣자니 이제 건물의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결국 공공도 힘들고, 설계자도 힘들고, 또 갑작스런 변화에 설계도, 또 시공도 어렵고, 이 모든 피해는 결국 이용자들이 다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소통해서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불신을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장치들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CM, PM 등이 그들인데요. 이들은 결국 발주처를 대신해서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주 업무가 있어요. 하지만 건축주(발주), 설계자, 시공자 이 세 명의 관계만 건설하고, 신뢰가 있다면, 부가적인 사회적 비용은 전혀 없이도 되거든요.

국내의 건축 발주제도를 살펴보면, 국제기준과 다른 크게 다른 것 이 하나 있어요. 설계자와 시공자는 잘못할 경우, 대단히 많은 방법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비해 건축주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어라 이야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 불신의 구조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발주에서 잘못된 내용은 궁색하게도 설계변경을 사정해서 얻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죄송하게도 빈번하게 외국의 사례를 드는데 국외의 선진국들의 모든 인용하시는 책들, 글들을 보면 발주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제어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국내 여러 유수의 현상설계들을 보면 상당히 불신할 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사를 투명하게 하고, 과정을 공정하게 하는 것 이전에 공공건축의 생산과정이 먼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먼저 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침서와 심사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사실 설계경기 하는 동안 이 지침서는 거의 성경책과 다름없는 건데 대충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최동규 :** 준비도 안 된 채 발주 된 것을 이야기하신 거네요?

**오섬훈 :** 박경립 교수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설계경기가 갖는 의미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70년대 때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현상설계로 발주했지만, 지금은 중요한 몇몇 프로젝트 외에는 일종의 발주 수단의 하나로써 현상설계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1등만 능사가 아니고 2, 3등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계경기라고 하는 게 좋은 작품을 뽑는 것 못지않게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신인 등용문도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현상설계도 있긴 하지만 또 PQ로도 시행한다는 말이죠. 정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는 국제현상설계를 해서 좋은 작품을 뽑아야 되겠지

만, 그런 것이 아닌 것들은 공정성 등의 심사 방법을 개선을 해서, 이 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등 외의 우수작들에도 참여의 폭을 넓혀 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1등을 하면, 마스터플랜과 50%의 빌딩 설계권을 주고 2등하면 30%주고, 3등하면 20%주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말이죠. 또 작은 규모의 시설들 예를 들어 동사무소신축설계 같은 것은 다른 방법의 적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서울시에서 경관건축가를 뽑았는데, 이같은 그룹들을 뽑을 때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방법의 긍정적인 측면은 2등, 3등이 좋은 안을 낼 수 있는 노력을 한단 말이죠. 지금은 1등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다른 안이 나올 수 있는 게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색깔의 2, 3등 안이 나올 수 있어서, 좀 거창하게 말해가지고 건축문화도 다양성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뭐 1등 아니면 꽁이다. 그런 게임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열정이 얼마나 생길까요. 몇 번 현상 끝에 스스로 자조적이 되어서 여러 모로 피폐해지고… 급기야는 좋은 사람들은 딴 곳으로 다 가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서 유학 갔다 온 저런 사람들이 학교로 도망가는 이유들이 뭘까. 왜 건축설계를 하겠다는 사람이 학교로 왜 도망을 가나는 이야기죠. 심하게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학교에서 할 역할과 건축실무에서 할 역할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토양이 너무 척박하니까 그런 토양들을 김일환 과장이 계시긴 하지만 일단 정책 중에 하나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동규 :** 그러니까 당선자 외에 2, 3, 4등에게도 계속 당선 될 때까지 노력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지요.

**박인수 :** 제가 미국의 어느 주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일정 규모 등 어떤 조건하에 공공 프로젝트는 – 주공이나 그런意义上 쓰는 방법이긴 한데 – 한 사람이 중복돼 계속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차피 공공성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기회의 균등성…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불신이 생기는 이유 중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당선된 업체가 계속 반복해서 당선 된다는 것’ 이거든요. 그리고 그 반복 당선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공공성이라는 게 굉장히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프로젝트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설계를 잘하시면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런 프로젝트의 비율은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상식적으로 20%~30%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 때 지어진 건물을 심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서류상 내가 무슨 건물을 했다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고, 그래서 결과가 어떠하다를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경립 :** 오섬훈 건축사가 말씀하셨던 2, 3등 안을 반영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등 안이 항상 무난한 걸로 끝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떨어지고도 작품이 이슈가 되어서 시대가 바뀌는데, 우리는 그럴 기회조차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김용미** : 그런데 그 설계경기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설계경기는 현대미술관 현상설계 같은, 시대를 선도하는 건축물에 관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건축물에까지 이슈가 되는 디자인을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도면 몇 장과 간단한 스케치와 설명서만 제출하는 제안서 방식으로 합니다. 우리처럼 현상설계하면 CG조감도, 투시도가 들어간 패널 여러 장에 보고서, 도면집까지 다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3, 4억짜리하고 20억짜리하고 같은 제출물을 내게 하느냐 말이죠. 우리는 아무리 작은 현상설계도 구조,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계획까지 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설계경기를 이원화하면 좋겠습니다. 사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건축물은 이슈가 되는 디자인이 뽑힐 수 있도록 설계경기를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일상적인 건물은 간단한 제안서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용우 건축사 (토론자)

| 칸 도시 건축사사무소

**이용우** :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박경립 교수가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일목 요연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간 진행되어 왔던 내용들을 보면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곧 UA권고안하고 국내 안하고 다른데서 항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가 우선 설계경기 참가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진입제한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UA권고안에서는 건축사그룹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는 PQ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걸러지니까, PQ 같은 게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건축사가 규모에 따라 설계 못 할 것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큰 규모의 건물이나 특수한 용도의 건물도 스터디하면 얼마든지 기획하고 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특히 현상설계에 당선 되어 지어진 유명건축물 중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건물을 설계해 본 사람만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평범한 건물을 대량 생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더 단축이 되겠지만, 더 좋은 안이 나온다는 보장은 사실 없는데, 건축사는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意义上 문제를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사위원의 구성이라든가 심사위원의 수와 심사내용이 공개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방금 이야기 했듯이, UA 권고안에는 다 있는 내용인데 그것하고 우리가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대개 심사위원구성을 보면,

건축 전문가, 그것도 계획 층 두 명, 구조 한명 내지 두 명, 그 다음에 시공… 그 외 설비, 전기, 토목 다 들어갑니다. 아파트 같은 대단지가 아니면 공공건물에서 토목이 차지하는 역할, 부대토목은 사실 굉장히 미미하고 건물 전체에 영향을 적게 미치거든요. 그래도 투표권은 똑같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심사에 참석을 해보면, 누군가가 앞장 서서 이야기를 하면 한국인의 정서상 거기에 대놓고 면박을 한다는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투표를 하는 게 아닐 경우에는 먼저 이야기한 사람의 의견대로 그냥 훌려가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심사가 공정하게 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심사자체의 구성, 심사위원의 구성에서부터 심사 과정 그 다음에 심사한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심사 의견이 뭔지 하는 것까지도 다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겠지요. 일단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떤 자자체를 보면 아예 심사 과정을 비디오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김용미 건축사가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CG를 없애야 한다”에 대한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 합니다. 요즘 공공건물 중에 당선된 안들을 보면, 거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대형 커튼월을 사용을 합니다. CG를 그려보면 커튼월만큼 효과가 나는 건물이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돌을 붙인다던가 뭐 다른 재료를 썼을 때는 우선 반사도 안 되고, 광택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건물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또 야경을 CG를 했을 때도 건물이 다 죽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커튼월로 해놓으면 효과가 참 잘납니다. 우선은 눈에 띠는 그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투시도상이나 조감도상에서는 CG로 아주 멋있게 되어있는데, 지어놓으면 다른 건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뭐 강북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구청사 같은 경우는 가서 보면 어떻게 저런 건물이 저렇게 서 있을까 하는 그런 가슴 답답한 경우를 느끼게 되는 것이 다 그런 연유라고 봅니다. 국제현상 작품집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보다 제출물이 훨씬 단순해요. 그냥 그래픽위주로 가고, 단지 색채를 표현할 때도 질감을 넣는 게 아니라면으로 처리 하든지 2차원적으로 표현하고,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공간이라든가 그 건축사가 주장하는 바가 다 표현이 되는데, 왜 그걸 굳이 CG로 해서 현란하게, 그냥… 어떤 상품을 고르듯이, 눈에 띠는 상품이나 고르는 것 같이 그런 식의 현상설계를 하느냐 이거죠. 그런 것은 이제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최동규** : 가장 중요한 게 실적 있는 자만 참여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란 거죠?

**이용우** :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를 한다면 현상설계안을 뽑을 때 그 기준이 목표가 뭐냐 하는 게 조금은 애매한 것 같아요. 현상설계란 완성된 설계도서를 뽑는 것이 아니고 계획안이라는 작품이 될 가능성

을 보고 뽑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설비, 전기라든가 각종 기능적으로 특별한 공간을 요구하지 않는 것들, 단순한 칸막이벽이라든가 이런 것 들은 얼마든지 실시설계 시에 건축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이 가능한 것 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현상설계 단계에서는 사실 배제되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채점표에 의해 심사할 경우 점수 항목 중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시간상 일일이 점수로 표기 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거고,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세워 졌을 때 변화될 수 없고 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에 중점을 두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워지는 건물 자체도 좀 나아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요즘 세워지는 현상설계 당선작들이 당선안을 보면 굉장히 멋있고 내용도 있고 공간도 좋고 이렇다는 인상이 드는데, 세워 진걸 보면 당선작하고 많이 달라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 원인중 하나가 설계자가 현상설계에 당선해서 안을 제출하고서는 공사에 관여를 못하고 감리를 다른 곳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건물은 설계자가 공사단계에서 감리단계에까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설계 의도가 시공과정에 정확히 전달이 되도록 하여야 설계경기 하는 취지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동규** :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중요한 항목이 있고 나머지는 디테일한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해서 제도 보완이 되고 법적으로 강제력이 발휘될 수 있다면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양순** : 현상에서 A지자체에 들어가는 건물이나 B지자체에 들어가는 건물이나 어디에 세워놔도 결국은 똑같은, 특성 없는 그런 건물들이 계속 선정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도 이야기한 '한국건축설계경기원'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조달청에서는 공사 발주만 하고, 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설계경기원에서 주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반관반민이 되도 좋고, 아니면 민간단체로 해서 국가에서 공인하고, 비용을 지원 해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 및 공기업은 현상업무를 위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민간현상도 의뢰 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세부적으로 전부 규정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난 건축사를 보면, 우리 건축사들은 불공정한 설계경기에 전부 참여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안 된 거죠. 지금이라도 건축단체가 통합되고 윤리위원회가 종전처럼 권위를 갖는다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보이콧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한국 건축을 마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가에서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에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김용미** : 설계경기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국건위 토

론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따로 기구를 만드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상당 부분 건축 발주를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조달청을 바꾸는 것이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토론을 많이 하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걸 실효성 있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달청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달청은 지금 현재 심사위원 비공개입니다. 심사가 끝

난 이후에도 비공개입니다. 왜 낙선했는지 더욱 알 수가 없죠. 또 심사위원 구성도 문제예요. 심사위원이 11명이면 건축계획 교수는 기껏 해야 2, 3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구조, 시공, 토목, 설비, 전기 분야 교수들이 들어가는데 설시설계도 아니고 계획안을 심사하는 건데 왜 이렇게 기술분야 교수를 많이 배정하는 건지 설계경기를 터키와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조달청은 설계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조달청에 근무하시는 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분은 설계경기를 했다가 능력 없는 건축사가 그림만 그럴 듯하게 해서 당선될 수도 있는데 그럼 골치 아프지 않느냐 오히려 PQ입찰로 하면 실적 있는 업체가 당선되니까 안전하다는 논리를 펴시더라고요. 자자체에서 조달청에 설계 발주를 의뢰하면 조달청은 설계경기는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거의 PQ입찰 아니면 격려입찰로 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PQ입찰 시 참여기술자 점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건축의 특이성을 반영한 기준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기준이에요. 참여 기술자의 점수 기준을 보면 건축기사가 있어야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올라가요. 건축사이면서 기사가 없으면 만년 초급입니다. 그런데 5년제 건축학과 나온 학생들은 어느 누구도 기사 따려고 안하거든요? 기사는 공학도들이 취득하는 거지 우리가 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고쳐야 돼요. 엔지니어링 기준으로 해서 설계발주를 PQ입찰로 하는 것.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엔지니어링 업체가 이 PQ로 많이 따가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일단 우리가 어떻게든 조달청하고 대화의 창구를 뚫어야 되겠습니다. 조달청이 변해야 자자체가 변하고 그려다 보면 설계경기하는 환경도 좋아지겠죠.

**최동규** : 방법론을 제시해주셨네요.

**박인수** : 저희가 왜 그럴까 계속 고민하다가 최근에 원인을 알았어요. 문제는 첫 번째로 국가 계약법에 있었어요. 말씀처럼, 왜 조달청에서 그러나 하면 건축 설계를 발주하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건축설계가 전문성이 없는 일반 용역과 동일하게 발주되고 있는 것 이거든요. 현재로선 국계법에서 건축설계를 떼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엔지니어링이나, 소프트웨어산업 등은 별도의 발주 방법을 만



김용미 건축사 (토론자)

|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들어 내고 있는데 말이죠. 건축설계를 별도로 발주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끼리 해놓고서는… 지금 액션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드릴 내용은 건기법 발표에 기술자 평가표가 있는데, 거기에 건축사가 없어요. 그러니 건축사는 평가에서 초급기술자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죠. 결국 PQ 등에서 건축사는 영원히 기술사를 이길 수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몇 일 전 대한건축사협회 제3법제위원회에서 건축사를 기술사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두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게 언제 실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영철** : 그게 이제 이번 건축사법이 통과가 되면, 김일환 과장이 오늘 그것 때문에 모니터링 하시려다가 국회 일정이 취소되면서 다행히 여기 참석해주셨는데, 건기법에 5년제의 졸업생들이 어떤 기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건축사가 또 기술사와 같은 동등한 레벨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이 같이 논의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동규** : 그동안 심사에도 참여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껏 참여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으신 김기수 교수가 한 말씀 해주시죠.



김기수 (발표자)

|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김기수 : 가끔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 지자체나 관련 단체에서 심사 의뢰가 옵니다만, 저 같은 경우 근무한 지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경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심사에 적극 참석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 심사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우 건축사가 지적 하셨지만, 대부분의 설계 안들이 다 유사한 수준의 결과물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다른 분들도 지적하셨지만, 당선안도, 2등 3등 인들도 변별력이 거의 없다는 거죠. 도면도 보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지만, 어느 안이 당선이 되든지 관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심사하기가 너무 곤란한 겁니다. 이를 분별 할 수 있는 것이 지침서인데 지침 자체가 두루뭉실하고 각 계획안들의 수준들은 이미 높아져 있는 현실이죠. 그러다보니 누군가와 서로 연결고리가 있으면 거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심사를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입장인데 부지런히 설명하려 오십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별로 문제가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출되는 안들의 변별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안을 만드는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을 거를 수 있는 자침이 주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심사를 가보면 그게 안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심사하기가 굉장히

힘이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심사과정에서 어떤 분이 리드를 하시면 훨씬 밖에 없는 이유들도 대부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침을 만들 때 현상설계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에 따라서 몇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현상설계를 하는 목적 중에 공통적인 것은 좋은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건축물이 지어질 때까지 어떤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설계지침을 만드는 기획단계에서, 다음에는 현상설계를 하는 동안에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코디네이트하고 그리고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까지도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정성 서비스는 남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중요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실제로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예를 하나 들자면 일본 센다이에 있는 미디어테크 전자 도서관의 경우 21세기 건축을 선도할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을 선정하기 위한 현상설계로 주목을 받았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이토토요가 당선이 되었는데 현상설계 전체를 코디네이트 하셨던 분이 이소자키였습니다. 아마 이 프로젝트에 이소자키가 아니었으면, 그리고 담당했던 지자체 공무원이 없었다면 이토토요와 같은 아이디어로서 당선되는 일도 없었고 지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분명 계획안에는 공사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사기법의 문제,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의 구조기준을 뛰어넘는 구조적 해석까지 시도하였지만 그 목적에 맞추어서 현실까지 끌어주는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소자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리를 하자면, 실질적으로 기획도 잘해야겠지만 그 기획들이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질 때까지 그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같이 고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영철** :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다시 되짚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현상설계 자체가 좋은 건축물을 뽑기 위한 것도 되지만 정말 새로운 건축기가 탄생되는 등용문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품으로 분명하게 평가를 하잖아요. 제출된 작품으로, 아까 이용우 건축사가 말씀하신 대로 거기마다가 꼭 오천 제곱미터 이상 똑같은 용도의 건축물을에 실적이 있는 자만이 참여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만 제곱미터로 한다든가. 이것은 그야말로 새롭게 탄생하려는 새로운 신인 건축가들을 탄생을 막는 대표적인 것이라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줘야 되겠다. 없애줘야 되겠다라는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최동규** : 오랫동안 말씀 하신 것을 지켜보셨는데, 우리 이용락 부회장, 예전에 그 국토부에 과장으로 계셨었고, 지금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으로 계신데,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니까 어떠신지 소견 부탁드립니다.

**이용락** :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 이용락 (토론자)

| 대한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개선방안이 객관성을 갖게 되고 설득력도 갖게 되어 개선방안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상공모에서 평가 시 비전문가인 발주처 공무원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점도 너무 설계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발주기관은 발주기관대로 달성시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발주기관의 이러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공무원을 포함한 발주기관은 작품의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기계, 전기, 소방, 조경 등 기능적인 면을 더 중요시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발주자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공사의 경우 예산 한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분양성도 중요하고, 사용 중 유지관리도 중요하므로 직원들은 그동안 필요한 것들을 지침에 반영할 것이고, 지침에도 모두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를 생각하며 평가 시 직접 참여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필요에 의해 평가에 참여하는 직원들을 비전문가라 하여 평가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역지사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인수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적어도 저는 현상설계를 발주하는 것이, 민간에서 제안된 안의 가치를 공공에서 사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안된 안이 좋지 못하다면 뽑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침서에는 발주자가 어떤 가치기준이 필요하다고 기록되어야 하고, 심사에서는 그 가치에 부합되는 안을 선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제안된 안들 중 최선의 안을 선정해야죠. 일단 그런 안을 선정했으면 잘 진행되도록 서로 협조해서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선정해놓고 나서 이게 아닌 것 같다든지, 결과가 염려 되서 문제가 있겠다고 하면 선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정했다는 것은 공공의 권한을 민간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공공프로젝트가 개인프로젝트와 다른 것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공공의 주인은 역시 이용자, 사용자입니다. 결국 내 건물, 발주자의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이나 권한, 실행을 민간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있다면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건축사들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설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공공건물을 공공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축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할 때, 너무 자신의 입장에서만 문제점을 바라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당사자로는 설계자뿐만 아니라 건축관련제도의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발주기관, 건축비용을 납세자로서 부담하는 국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제도를 포함한 건축관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할 때는 이들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개선방안이 객관성을 갖게 되고 설득력도 갖게 되어 개선방안이 실

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 민간건물처럼 컨트롤 한다는 것은 소위 공공건축에 있어서 그 의미를 상실할 수 있는 중요한 오류입니다.

**이용락 :** 제 말을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공공의 범주에 기계적인 부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함께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조익수 :** 보충설명을 드리면 설계의 평가는 건축설계 및 디자인에 직접 참여한 분 즉 건축계획 전문가로 제한하고 발주처의 공무원이나 구조, 기계, 전기, 통신, 토목 등 엔지니어링 분야의 전문가는 설계안을 결정하는 설계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되, 기술위원회 등의 심사위원회에서 설계안에 대한 기술적 의견을 제출하여 평가자가 인식 하도록 하여 건축계획과 디자인이 우수한 설계안을 당선�록 하여 설계단계에서 보완 할 수 있는 기술적문제로 우수한 설계안이 채택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토록 제안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는 것이 있는데, 발주처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발주처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의 의미를 건축가의 입장에서만 요구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 드렸던 설계경기 제도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동규 :** 이용락 부회장이 말씀하신 것은 현상설계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공식화된 결과물이 현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에 계실 때 지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그것으로 용역의 성패가 갈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술심사에서 충분히 걸려질 1차 심사의 필터링으로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김일환 과장이 백성의 의견을 다 들으셨어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환 :** 비록 국토해양부에서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곳에서 근무하고는 있지만, 설계경기나 감리와 같이 구체적인 발주 방법에 대하여는 저희 과보다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과 업무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나 내용에 대하여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니 그 내용이 심각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건축계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 김일환 (토론자)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장

방금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제안하신 사항들은 현장에서 직접 느끼신 사항을 제시해주셨다고 봅니다. 일부 개선되기도 했지만 제가 처음 공직 생활을 시작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의문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는데도 아직 개선되지 않는가 입니다. 개선방향이나 답은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개선하는 접근방법이 부족한데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단순히 문제만 제기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가지고 담당부서나 관련기관에 끊임 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계 내에서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제기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달청에서 건축분야를 발주하는 분들이나 지자체에서 인·허가 하는 분들, 심지어 국토해양부내 건축설계경기 치침을 다루는 분들도 알고 보면 모두 건축을 전공한 분들입니다. 제기하신 문제점에 쉽게 공감하고 개선책에 동의하실 분들이라고 봅니다. 서로 소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제기하신 문제점이 단순히 건축계의 어려움이나 건축계의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개선하는 것이 사회 또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논리 개발과 공감대 형성입니다. 오늘 논의하신 분들은 대부분 건축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건축 설계경기의 문제점을 몸으로 느끼시고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건축계 밖에 있는 분들도 그런 문제점을 이해하고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계 밖에 있는 분들의 공감을 얻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제도도 쉽게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오늘 논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쳐질 수 있도록 나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 고담준론은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어떻게 실현하고 구현할지 액션플랜을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라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양순** : 건축 외 분야의 기술사는 설계와 시공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건축만 건축사는 설계하고 시공기술사는 시공을 하게 되고 구조기술사는 구조를 하게 되어있죠. 이것은 건축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조달청에서 “엔지니어링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똑같이 한다”라는 것은 국가에서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건축사제도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반대로 말한다면 관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청에서든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건축설계경기원을 만들든 간에 엔지니어링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이 아니라 건축만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건축 단체들은 그런 것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만들어 관에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동규** : 지금 말씀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설계경기시스템은 엔지니어링법 기준으로 운영하는데, 사실 건축사가 설계해놓고 왜 그 법을

적용해서 운영하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방금 전 조익수 건축사가 말씀하신 것 중에 당선자에 대한 발주자의 거부권이 독일에는 있습니다. 각 나라의 심사제도를 보니까 독일은 애써서 뽑아 놓아도 건축주가 거부하면 못 잣습니다. 그 대신 일등 당선자에게는 굉장히 많은 상금을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을 뿐이지 제도는 이미 다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다음에 과거 40년을 돌아보고 또 그사이에 시간이 잠깐 흘러서 과거가 되어버렸는데,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새로 원고 쓰시는 기분으로 요약해보시지요.

**박경립** :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인데 건축사는 독립기관입니다. 검사가 독립기관이라 그려죠? 건축사를 취득한 사람은 혼자해도 되고 100명을 데리고 해도 되고, 건축사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것 이 아니거든요. 근데 건축사의 권리를 못 찾고 있는 세상이 이상한 것 이죠. 그것은 건설이 압도하고 있는 고도성장의 영향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어요. FTA가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건축도 앞으로 중요한 논제가 될 것 입니다. 우리만의 잘못된 관행이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UEA기준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제도들을 상호교환하게 될 시점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계경기를 실시하던 초창기에는 진짜 좋은 작품들을 뽑는 잔치 같은 것이었는데, 점점 발주제도의 편의함 때문에 가벼워서 그것을 굳이 설계경기를 안 해도 될 것까지 하고, 공공발주 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똑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구분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상설계로 뽑은 것의 창작성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작권에 관한 것입니다. 건축사의 설계를 거부는 할 수 있어요. 상당히 보상은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제도가 사실은 안 돼야 합니다. 만약 고치더라도 건축사와 충분한 협의 하에 해야 됩니다. 문제는 건축사가 설계 했던 것의 중요 콘셉트가 훼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동규** : 제가 건축 3단체 설계경기운영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10몇 년 전부터 일본, 독일 자료를 직접 제가 구해보면서 좋은 제도가 이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독일제도 같은 잘된 것을 차용하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되어있는 법을 바꾼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를테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이미 일차 심사에서 떨어진 것을 다시 당선 시켰듯이 경기설계 참가자들이 신뢰 할만한 심사위원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주면 설계 경기가 축제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치밀한 법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신뢰회복, 그것이 관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뭐 법이 잘 돼서 추장을 따르나요? 추장이 믿을 만하면 다 따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신뢰가 없으면 국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후쿠야마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일이 확인을 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다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조익수 건축사가 말씀한 신뢰할 만한 과정, 신뢰할 만한 심사위원, 신뢰할 만한 지침.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이나 말씀하셨고, 그다음 오선훈 건축사는 'Winner takes all'이라는 아바의 노래도 있지만, 당선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2, 3, 4등에 대한 배려, 그래서 계속 2, 3, 4등도 피해보지 않고 1등을 향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진지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다음 진입장벽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고, 그 다음에 방법론에 대해서 조달청이 바뀌어야 되겠다고 했다가 또 그곳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가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은 따로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액션플랜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오신 김일환 과장은 더 이상 이러한 좌담회는 하지 말고, 어떻게 그런 좋은 방법들을 실현하는지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지침을 주셨습니다.

설계경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5분 쉬었다가 감리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Part 2. 감리제도



**오선훈 :** 「건축사」지 500호의 시간동안 드러난 감리제도—그 자체로서 또 설계와 연관해서—의 변화와 현재의 감리제도, 외국의 제도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향의 모색을 김기수 교수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해의 공통 바탕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관과 모색을 바탕으로 여러 의견이 개진되어 다시 한번 더 감리제도에 대한 인식과 설계와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일단 앞 단계에서 설계경기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감리제도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삼풍백화점 내지는 성수대교가 무너져면서 제도가 급속히 규정되어 복합화 되어가는 것 같고요. 발주제도가 다양화되면서 김기수 교수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감리도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대강 김 교수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설계 단계에서 시공을 거쳐서 어떤 의지들이 일관되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 또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느냐, BIM 같은 것으로 유지될 수 도 있고, 혹은 또 다른 것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강연에서도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서 건축사대가 기준에 언급되어 있는 속칭 디자인감리라고 하는 사후관리 설계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좌담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조금 논의를 좁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감리 제도가 설계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단 모두 강연에서의 김 교수의 견에 대한 것입니다. 즉 설계에서 감리까지는 그런 점에 초점을 맞췄

으면 싶어요. 그게 현재의 상황을 보면 대개 공공속의 발주는 감리와 설계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와 감리가 연속될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설계감리가 분리된 상황에서 설계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짚어보죠. 우선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현재 복합화된 대형 건물들을 많이 다루시는 사무소에서 먼저 실마리를 풀어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익수 :** 우선 근본적이지만 조금 포괄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감리문제에 관한 첫 번째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건물의 가치문제에서의 완성도에 감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공건축물 발주제도에서는 설계와 감리는 별도의 영역으로 규정, 설계자가 아닌 감리자의 선임으로 당초 설계자의 설계 의도나 디자인을 달리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발주처의 임의 변경 등 당초의 건축물의 건립 취지에 맞지 않아 설계자의 저작권의 문제로 비하할 잠재적 요인이 있을 뿐 아니라 감리단계에서의 과도한 설계자의 의견이나 설계의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질의로 설계자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경제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일차적 이유는 현재의 감리업무의 정의는 관련법령에의 적법성 확인, 기술적 안전 확인, 시공품질,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의 확인, 도면대로의 시공여부 등 주로 엔지니어링에 주목적을 두고 건축물의 건립 목적이나 기능 유지, 공간 구성의 적정성과 디자인 요소의 유지 등 계획 및 디자인 관점은 제외 되어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향후의 감리는 현재의 기술적 감리 이외에 디자인 감리 영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발주조건에서 볼 때 감리비는 투여인력의 인원과 일수에 따른 인건비로 책정하는 것과 달리 설계비는 공사비에의 비율로 산정함으로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구조, 기계, 전기, 토목 등 의 외주비를 부담하면서도 설계비보다 감리비가 더 많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어 설계자가 감리단계에서의 디자인감리를 보수대가 없이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감리업무에 디자인감리를 포함하여 일정 자분을 설계자에게 할당하거나 별도의 디자인감리에 대한 용역비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충분히 해소 되리라 보며 설계자는 당초 설계자로서의 건축물의 가치 및 디자인 확보에 충실히 수행함으로서 첫 번째 문제인 저작권의 문제도 확보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미 :**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납품할 때 도면이 현장에서 필요한 도면수준의 70%정도라고 봅니다. 30%는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도면에 다 표현하지 못한 세세한 부분에 대한 해석, 현장 사정에 맞는 재료선정과 적용방법, 색채선정 등 소위 습드로잉 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할 모든 것들이 시공과정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건축물의 경우, 그것을 누가 하는가 하면, 대부분 현장 소장하고, 시설과 담당하고 감리자가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완성도가 이토록 떨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작가라도



민간건축물하고 공공건축물을 했을 때 품질 차이가 나는 것은 시공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 감리자가 맡을 수 있는 것은 시공감리입니다. 현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설계디자인 분야까지 그 분이 할 수는 없는 거죠, 현 제도 하에서는 책임감리자의 역할이 너무 비대해져 있습니다.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해서 설계디자인 감리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저는 감리비 중 최소 20%만이라도 설계자에게 할애하여 설계디자인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섬훈 :** 시공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방금 전 이야기를 하신 말처럼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저작권 문제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건물 수준을 높인다는 이야기인데, 대개 감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설계도대로 충실히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 감리 역할을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공관리는 해야 되요. 그리고 네 번째는 품질관리가 있고 안전 관리가 있고, 사실은 감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많이 있더라고요. 초창기에 건축사법 감리나 작은 규모들은 그냥 도면과 최소한의 품질관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러한 여러 종류의 관리 면들이 감리가 분리되는데,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분리가 되었던 부분들이 충분히 수긍이 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분리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를 들어서 큰 규모나, 터키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복합화가 되어야 하니까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작은 건물들, 그것조차도 감리가 분리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나오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짚어보고, 시공단계에서 소위 디자인감리 즉 사후관리 설계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를 어찌 봐야 할지 조금 더 이야기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용우 :**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섬훈 건축사가 기존의 건축사 감리 하던 것 하고, 그리고 건기법에 의한 감리하고 요즘 와서 건기법안의 사업관리, CM에 관한 이야기하고. 어떤 규모라든가 하는 일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니까 분리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 생각에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다시 뒤집어 보

면, 그동안의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가 업무의 내용 자체가 단순하다거나 소량이었던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고 비용이 작으니까 서로가 양해하는 과정에서 그 일을 안했을 뿐이지, 법적으로 보면 지금 거론된 감리방식의 업무와 거의 대등하게 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요 근래에 와서 민간도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해서 규모가 작은 공사의 감리를 맡아도 건기법에 나와 있는 이런 조항들까지 다 요구하고는 합니다. 감리계약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계약서 내에 이게 상주감리나 아니냐에 따라서 업무범위가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무한 책임으로 다 지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비용 적게 주고 그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업무임을 알고, 특히 출장해서는 그걸 다 못하니까 서로 양해하고 이해해 주었던 것이지 책임에서 면책이 되는 아님란 이야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감리제도, 굉장히 세밀하게 분류가 되어 있지만은 사업관리 라든가 책임감리 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결국 건축사에게, 건축사가 가지고 있던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누어 준거지 건축사가 애초부터 못할 일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내용들 중에 CM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저희도 CM하고 같이 일을 해 봤는데, 설계해주고 납품을 해주고 나면 건축사들의 기본 업무는 끝이 나야 되는데, 공사 끝날 때 까지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공정회의에 꼭 불려가서 계속 공사 끝날 때까지 서포트를 해줬어요. 비용은 물론 당연히 없죠. 그런 과정에서 CM측의 투입인원을 보면 현장에 딱 한명이나와서 상주를 하고, 그때 공정마다 필요할 때 마다 전기, 설비, 토목 기사들이 한명씩 나와서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상주감리를 하더라도 그 정도 인원은 당연히 투입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는 업무 자체가 뭐가 다른가, CM에서는 CM을 하면은 공사비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축주한테 이득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감리제도를 보면 CM을 하든가 종합감리를 하던가, 건축사감리를 하던가 과연 어떤 게 더 이득이 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과연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요. CM측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건축사의 권한은,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을 만큼 막강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건축사는 책임은 하나도 없다. 스스로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책임은 시공자가지고 설계자가 지는 거지 CM은 책임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책임 없이 어떻게 공사를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용미 :** 건축사 사후설계관리업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에 대한 용역비가 건축사 대가기준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 안 해서 그렇지 사후설계관리업무를 이용하면 CM도 필요 없고 상주감리도 필요 없는 공사가 있을 수 있죠. CM이나 책임감리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민간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제도잖아요. 건축물에 따라서는 CM이나 감리 다 필요 없이 그냥 설계자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관리할 수 있고 그것을 사후설계관리업무로 할 수 있는 거죠.

**오섬훈 :** 현실을 보면, 설계와 감리를 통합 했을 때 많은 장점이 있음

에도 개인 민간 건축주들도 종종 분리발주를 시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대개 민간 개인 발주자들의 기술부족으로 인해 감리를 통해서 설계내용을 검증하고 컨트롤하는 등 여러 가지 다목적이란 거죠. 분리를 하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팀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협회에서도 감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회 내에서 회원들간 감리에 대한 이견들이 있는 것은 저도 알지만,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정의에 의해서 움직여야겠고, 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감리의 국제적 정의에 대해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수 :** 제 생각에는 말씀대로 이것도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상호간 못 믿어서, 방금 전 이용락 부회장이 말씀대로, 발주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보험에 든다. 이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도를 잘 만드는 것은 그 보험보다 훨씬 더 코스트를 다운 시킬 수도 있고,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도를 굉장히 복잡하고 정획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원하는 목적과 상관있는 복잡함인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감리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리제도가 자꾸 지역적이고 상황논리 등에 의해서 들었다 놋다, 분리했다 붙였다 이러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감리라는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이사님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협회에서도 감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회 내에서 회원들간 감리에 대한 이견들이 있는 것은 저도 알지만,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정의에 의해서 움직여야겠고, 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감리의 국제적 정의에 대해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감리 업무를 저작권 측면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건축계 내에선 이야기하기 편리할 것 같은데, 이용자들 입장에서 이야기 할 때는 이 분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으실까? 오히려 이걸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감리를 저작권적 측면에서 보는 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일반적인 사고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회의 문화적 성숙도란 측면, 또 문화적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생산자를 배려한다는 측면 등이 그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내 건설 관련 분야가 특별히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건설산업에서 경제적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린 듯해요. 최근 논란이 되는 음원제작자와 음원 유통업자의 관계와 유사하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법령으로는 하얀색 건물을 설계 했는데 검정색 건물로 지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하지 않는 건물이 지어져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조금 법이 바뀌어서 색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것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정할 수

있지만 그게 효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도면의 완성도란 측면인데요. 사실 설계가 100% 완벽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 그런 설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 설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선 건축의 모든 부분을 도면으로 그릴 수 없고, 그려진 것도, 시공사에서 SHOP DWG을 다시 그려 설계자승인을 받아야 하니, 설계 도면이 완벽하다는 것은 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설계자는 현장에서 SHOP DWG을 승인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해서 디테일들을 전부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시공자가 승인해서 알아서 하거나 현장 감리가 승인을 하면 끝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제 주변에 음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로 들면 작곡가가 작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연주를 하지 않고 지휘자한테 넘기게 되는데, 이 지휘자가 지휘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다보면 악기가 안 맞거나 연주자의 자질 등 여러 문제로 연주에 애로가 생겨요. 실제로 그럼 반드시 작곡가랑 협의 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연주곡들도 보면 지휘에 따라서 계속 번호가 바뀝니다. 조금씩 편곡이 바뀝니다. 연주를 위해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마찬가지로 설계자가 설계한 것을 시공할 때 분명히 상황에 따라 다르죠.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시공하시는 분이 그게 '아 귀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사 실행 전, 미리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맞추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먼저 말씀하신 일본처럼, 감리 이런 거 말 안 해도 될 정도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용우 :** 방금 전 사후 설계감리, 사후설계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박인수 건축사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반 건축주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설계가 왜 납품하는 단계에서 100% 완성이 안 되었느냐 하는 것 자체를 건축주 입장에서 이해를 못한다. 이거죠. 당연히 납품이 될 때는 설계가 100% 완성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설계가 납품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사 끝날 때 까지 계속 관리되어 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축주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후설계관리 문제가 나오게 되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은 제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 보면 항목이 계획설계, 기획설계, 실시설계, 사후설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럼 설

계 한 사람이 애프터서비스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물건을 사도 애프터서비스를 하는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따라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사후설계라는 어떤 설계의 연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건축사의 의도에 따른 창작물이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끝까지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자의 시공지도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익수** : 한 가지 여쭈어 볼게 있는데, 사후설계라는 것이 그것입니까 아니면, 건물 준공내고 난 다음에….

**최동규** : 아니요, 설계 끝나자마자 우리가 그동안 디자인 감리라고 부르는 의미가 바로 사후설계관리라는 법적 용어로 귀결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용우** : 저희가 납품하고 나서 그다음 현장에서 질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설명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의 비용을 별도로 받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섬훈** : 국건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논의된 바 있었다는데, 전영철 건축사가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전영철 건축사 (토론자)

| 대한건축사협회 상근이사

회장단하고, 임원들 워크숍 때 한번 의견 수렴을 하면서 토론 끝에 투표를 해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시도 회장님들과 임원들이 건축의 기본에 따르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설계감리는 분리되지 말아야 한다 하고 자체 결론이 난적이 있는데, 일단 사실 설계자가 감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내가 얘를 낳았는데, 너 얘를 잘 키울 수 없으니까 무조건 국가한테 위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건축사들이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비하고 있었느냐 하는 그 반성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소형건축물을 설계 감리 분리를 해야된다 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축사가 책임만지고 감리비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설계비에 포함시켜서 그냥 설

계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분리하자고 해서 감리비를 제대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작은 건축물들 감리하는 것을 보면, 그냥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만 판단하는 정도의 감리만 했지 그야말로 안전관리를 하거나 품질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사후설계관리를 해주거나 뭐 이런 감리를 제대로 해주는 사람보다는 안 해주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다보니까 감리비를 제대로 못 받죠. 일을 제대로 안하니까. 그래서 실제 제가 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 하면, 그저께 월, 화요일날 주택공급과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설기술연구원의 황은경 박사가 발표를 한 내용이 건축물의 공사감리 법의 필요성에 대한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축법도 분법화 되어야 된다고 건축계에서 이야기 되고 있고, 또 건축물의 공사 감리법이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가 되게 된다면, 모든 주택 감리라든가 건기법이나 책임감리가 다 건축법에 있는 감리까지 해서 다 한군데로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되면 틀림없이 그 것은 아마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변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건축사들이 감리 전문회사를 가지고 있는 건축사들도 있고 안가지고 있는 건축사들도 있지만, 내가 정말 감리를 해야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축사들이라면, 정말 그 감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 그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장비 구매라든가, 뭐 이런 별도의 노력 없이는 말로 내 몫이다 라고만 쟁기기에는 비현실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용미**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감리를 위해서는 기제도 사야되고 준비도 해야 된다는데, 그 감리는 검측이고 안전관리업무이고, 우리가 설계자로서 감리에 참여해야 된다고 할 때 업무와는 좀 다릅니다.

**전영철** : 물론이죠. 그러니까 감리는 건축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후설계관리 라고 하는 디자인감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감리의 몫을 보면 여러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후설계관리는 많이 받아도 20%, 30%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70%의 몫도 건축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건축사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20%, 30%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사후설계관리라고 하는 디자인감리라고 그 부분 당연히 포함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건축사가 하면서 원해야 된다는 거죠. 건축사 스스로가 원하기만 할 뿐이지 노력도 하지 않고 원하기만 해선 안된다 라고 하는 자성의 소리도 귀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용우** : 규모를 갖춰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감리라던가, CM이라던가, 종합감리라던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현장조직이 그렇게 방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개인의 건축사사무소에

서 그런 일을 한다 했을 때에는 그런 건축사사무소들이 동시에 여러 군데 현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아주 작은 조직으로도 감리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죠. 프로젝트에 있어서, 물론 건축사가 중심이 되어서 필요한 인원은 충원해서 하기도 하고, 또 기존의 협력업체에 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굳이 어떤 감리전문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만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전영철** : 제가 말씀 드린 게, 감리 전문회사를 같이 차리자는 게 아니고, 감리전문회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건축사사무소에서도 감리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감리전문회사들이 건축사에게 비전문적 집단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 논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용미** : 그것은 약간 초점이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회사 같으면 감리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건축사가 설계 한 것을 건축사가 감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리는 PQ입찰로 하기 때문에 거의 따낼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오선훈** :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들이 논의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설계, 감리가 분리된다면, 두 번째 이슈가 되는 사후설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사실은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느냐 통합하느냐, 물론 통합을 하려고 하면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김 교수가 이야기 한 것처럼 외국에서는 감리단계가 설계내용의 연속성 등의 이유로 대부분 통합해서 진행하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사는 감리의 범위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비를 제대로 못 받고… 하는 등의 이유가 설계, 감리의 분리에 빌미가 된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설계, 감리가 분리되었을 때 사후설계단계에 설계자가 정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그에 부응하는 적절한 대가를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야기를 전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금 법으로서는 설계 감리가 분리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용미 건축사가 말씀하신대로, 별도 비용 없이 자꾸 불리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러서 자꾸 가게 되니까. 그렇다면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사후설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법에 정해져있는 것은 물론 그게 사후관리 설계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설계자가 자기가 설계한 건물의 공공공사 감리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을 준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설계자가 연속되게 감리까지 가기 위해서.

**최동규** : 공공건물은 법적으로 설계자가 감리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찾아오려면 법적으로 찾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설계관리

니 뭐니 하는데, 확실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설계하는 행위를 마치 애를 낳는 과정에 비유한다면, 애를 낳아 기르는 것을 남에게 빼앗긴 거지요. 설계자가 현장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애만 태우는 거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계를 성실하게 잘해서 고객이 만족하면 일은 두개가



**최동규 건축사(설계파트/과장)**

| 건축사자연친위원회 위원장  
|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리는 자동으로 설계자에게 오게 된다는 거지요. 저는 사전에 건축주를 미리 교육을 시킵니다. 생모가 마음에 안 드시면 계모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모가 마음에 들면 그냥 아이를 기르게 하시라고 합니다. 처음에 사전교육이 없으면 감리도 하나의 이권이니 계속해서 감리를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감리는 분리해야 됩니다. 설계가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고 설득합니다. 저는 설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건축주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건축주가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때 몇 점 받고 졸업했습니까? 물어봐요. 60점 이상이면 졸업 시킨다고 말하지요. 85점 이상은 우수생이고요, 설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빙대어 말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만평, 칠천오백 평 되는 규모도 다 건축사가 건축사감리를 했어요. 건축사가 다 감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을지병원 설계를 했는데 워낙 건축주가 의심도 많고 그러니까 감리를 S설계에 맡겼는데, 감리가 하는 일을 보니 경찰의 일과 비슷하더군요. 경찰업무가 편하지요. 설계의 잘못만 들추어내면 되는 거지요. 한번은 감리가 부르기에 한번 갔지만, 다음부터는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르는 아이를 왜 내가 돌보아야 하느냐고 말이지요. 그렇게 현장에 가서 컨설팅 할 때도 사실 비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녜요 그렇죠? 어쨌든 공공건물을 감리를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소원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리더급 건축가들이 모조리 연명해서 헌법소원 한 번 낼만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여자 분이 고속도로로 오토바이 못 타게 다니게 한다고 헌법소원 낸 거 있잖아요. 저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감리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법으로 만이 다시 찾아올 수 있고, 민간건축의 경우는 설계할 때 건축주가 최대한 만족하도록 해주면 일이 두 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 하죠.

**김용미** : 우리나라에서 책임감리는 성수대교 사태 이후 생긴 것이죠. 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출발한 것이 아니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시공관리하기 위해 생긴 것인데, 그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대체로 책임감리비는 건축설계비보다 클 때가 많습니다. 시장이 커지다 보니 감리협회도 짐짓 커지고, 이 분들이 초기일관 설계와 감리는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시장이 거기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설계자는 도면 납품과 동시에 배제되는 현실에서 어떻

게 뛰어난 건축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세계적인 건축물이 많은 유럽에서는 건축설계자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참여하고 설계비와 별도로 수고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건축사의 설계를 못 믿으니까 감리가 있어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굳이 꼭 분리를 해야 한다면 설계자가 설계디자인 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비의 30%는 그 수고비로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락** : 이야기를 듣다보니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방금 전 김용미 건축사께서 70%만 있다고 이용우 건축사의 말씀을 지적 하셨잖아요? 정말 설계도서를 발주처에 제출할 때 70%만 완성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30%는 사후설계라는 형태로 추후에 완성시키는 것입니까? 이것이 타당한건가요?

**최동규** :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종 신부가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고 들어가는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용우** : 지금 30%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건기법에 의해 감리가 분리되어 있고, 감리를 건축사가 못하고 있는데 설계자가 업무진행상 현장에 불려 다니고 하니까… 결국 그건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니까. 건축사가 거기에서 몇 퍼센트는 우리 돈이다 하는 차원이고, 본질적으로는 감리 자체도 처음 이야기했듯이, 분리될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다 해야 할 일이고, 100%다 이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비율이 나온 것이겠지요.

**이용락** :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건축사가 설계할 때 해야 할 것을 다 한 후에 추가적으로 하는 일이냐, 아니면 미처 완성되지 못한 일을 사후에 보완해주는 일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인수** : 발주처에 납품이 완료된 후. 그러니까 설계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이죠.

**이용락** :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후 설계가 본래 해주어야 할 일을 미처 해주지 못하여 사후에 해주는 것이라면 설계보수를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완성된 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인 것이라면 제대로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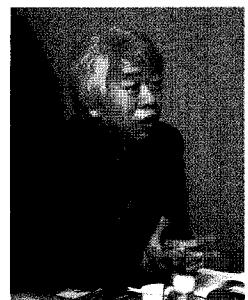
**박인수** : 그래서 미국에서도 CA, 컨스터션 어드민이스트레이션이라고, 업무를 하잖아요. 발주처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완료했다고 정리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공으로 넘어갈 순 없는 것이죠.

**최동규** : 미국건축사협회 규정에, 건축사는 적절한 때에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가 원활이 되도록 지도 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

니까 못 가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박경립** : 건축사하고 감리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한 이야기인데, 제대로 수기를 안주는 우리나라 현실 때문에 편법적으로 생겼던 것으로 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계한 사람과 시공한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설계를 프로세스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어느 시점에 끝나고 납품하면 되는 것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설계는 허가를 냈을 뿐이지, 그게 완성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현장에서 보완되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고, 그 보완되는 것은 건축사가 끊임없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제도가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보수도 확보되어야 하고요. 시공업체는 건축사가 설계한 것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질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시공자 측의 책임이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공자는 기본적으로 생산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으로 분류가 되고, 건축사는 설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기여하는 공익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건축주는 현장에 있는 시공업체의 말에 기울게 쉽습니다. 건축사의 설계가 건축주나 시공업체에 의해 마음대로 흔들려 가지 않도록… 건축사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박경립 교수 (발표자)**

|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이용락** : 혹시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공자가 설계도서를 보면서 시공을 하려고 했더니 설계도서의 표현대로 하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따라서 잘못 설계되어 있거나 부족한 설계를 보완하는 성격은 아닌지요?

**장양순** : 그럴 수도 있어요.

**김용미** : 그것을 보완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조익수** :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내용인데, 설계감리를 구분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다면 전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공사 감리까지의 업무가 다 설계자의 업무라고 봅니다. 다만 한국의 형편상 설계과정에서 설계단계의 업무와 공사단계에서의 업무를 편의상 설계와 감리로 분리, 용역비 산정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설계자와 감리자가 구분되고, 설계하는 건축사도 민간분야의 용역계약은 평당 설계비로 수주하고 감리비는 그 계약에 포함 서비스차원의 업무로 인식하는 등 설계자로서의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 고 그로 인해 책임감리제가 되어 감리는 설계와 분리되었고 설계자 대신 별도의 감리업역과 감리자를 제도적으로 도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그러나 설계와 감리업무는 동일 업무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아주 중요합니다. 건축법에서 시공감리의 정의는 조금 전 이야기 했듯 이 건축법 및 설계도와의 일치 여부 확인, 시공 품질관리 등 엔지니어링 업무로만 규정 한다면 당연히 감리는 다른 사람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건축사가 해야 하는 업무는 그런 엔지니어링 측면이 아니에요. 건축의 완성이고, 책임이고 계속 품질을 높이고, 예산은 조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계와 감리를 분리해서 안한다는 이야기고, 그러나 감리단계의 업무에서도 건축물의 기능과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설계자로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과 의지는 필요하며 현대의 설계, 감리 분리 상태는 건축사가 이를 간과하였다고 봅니다.

그럼 책임감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감리제도를 이제 와서 부정 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시공감리에 발주청의 감독권한 대행업무로 규정하였는데 디자인감리 업무내용을 추가하여 설계자의 책임감리 업무에 직접 참여 토록 하는 제도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감리업무를 보면 엔지니어링적 업무, 즉 시공, 품질, 안전관리, 검증 등은 사공사의 업무이고 설계와 디자인의 품질관리 즉 설계단계의 업무가 감리자의 주 업무이며 이런 관리체계 아래에서의 건축물의 하자 책임은 감리자가 아닌 시공사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제적 기준과 한국의 기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리에서의 책임의 의미는 공사에 대한 책임의 의미 보다는 당초 건축물의 내재적 가치를 규정한 설계자의 해석이 시공단계를 거쳐 완공 될 때까지의 완성도에 대한 설계자로서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시공의 책임은 시공자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용우** :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해외 대형 공사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곳에서는, 실질적인 검증 자체도 시공자가 1차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inspection sheet 청구하는데 보면 현장 소장이 '내가 이러이러한 사항 다 체크하고 다 구조적으로 이상 없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합니다.' 하고 싸인하고 제출을 하면 이 서류를 확인하는 게 사실은 감리자하고 설계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건축사는 그것을 모두 설계자가 가서 하고 나서, 감리자가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인수** : 그러니까 시공한 사실 증명을 원인자가 증명을 해야죠. 그걸 다른 사람이 가서 증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용락** : 그렇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후설계가 잘못된 것에 대한 보완성이격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면 총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설계비를 산정할 때 설계비 속에 포함시켜서 요율을 산정하는 것이 좋지. 그걸 따로 떼어서 굳이 그것이 설계니 아니니, 그런 논쟁을 왜 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김용미** : 건축설계대가기준에 보면, 건축사가 흔히 설계비라고 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외에는 설계비요율이 명확히 없지만 사후설계관리업무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있으면 당연히 대가가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정부 예산처에서 이 업무에 대해 이해가 없다 보니 예산책정을 안 해서 우리가 무료로 사후설계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만 설득할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처도 같이 설득을 해야겠습니다.

**이용락** : 지금 건축사법에 보면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은 건축사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다' 그때 설계의 범위 속에 들어간다 하면,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범위가 자동적으로 사후설계 그 업무 서비스까지 들어가고, 이 일도 당연히 건축사가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김용미** :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익수** : 저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감리업무 영역을 세분화 시키는 논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분화하기에 앞서 설계자의 업무 내용에 시공단계에서의 업무 규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시공단계의 감리업무에도 엔지니어링 업무 내용 이외에 디자인감리에 대한 업무 규정이 제도적으로 명문화 되어야 설계 또는 감리업무는 건축사로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선훈** : 사실은 시공감리나 책임감리에 있는 공정이라든지 품질 등 의 엔지니어링적인 요소들은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할 부분들인데, 그게 책임감리나 시공감리라는 이름으로 이중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감리에서 그러한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심도 있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익수** : 책임의 문제하고, 그 문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장양순** : 건축사법에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해외의 예에서 보듯이 감리 필요 없이 공사의 모든 것은 시공자가 다 책임지고, 우린 디자인에 대한 것만 해결하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디자인 감리하고 모든 공사업종을 종괄 지휘하는 비용

을 디자인 감리든, 사후설계 감리든, 어떤 명목으로라도 노력한 만큼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국가에서 보장해 줘야 합니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민도와 건축사의 자질이 고르지 못함으로 분리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시골도 아니고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설계한 빌라도 대지레벨이 6m 차이 나게 시공되어 있는 실례가 있어요. 그런데 건축사는 시공업자인 건축주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윤리와 의무 이전에 나한테 일 준 사람을 어떻게 고발하느냐. 이런 것들이 인천 같은 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감리하고 설계를 분리해서 감리자를 별도로 두어야만 책임도 안지고 감리도 충실히 해진다는 것이지요. 감리가 설계의 연장이다라고 하는데 원칙은 합의하만, 실질적인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설계자의 디자인 감리와 타 건축사의 시공감리를 이원화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성훈** :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듯 같습니다. 설계와 감리의 연속성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식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분리가 안되는 게 티당하다고 하기는 하지만 일단 분리가 되었을 때 사후설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 봤습니다만, 아까 설계경기 할 때도 김일환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반복 되어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재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후설계를 어떤 방법으로 정말 가능하게 하느냐에 하는 부분을 좀 더 논의하고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장양순** : 그 점은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작은 건물도 전부 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는 전기, 설비는 설비, 그 다음에 경계선, 구조, 방수 등 건축분야도 전부 해서 그것을 감리라는 제목으로 하던 안전관리로 하던 간에 제 3의 건축사가 하고, 설계자는 설계에 대한 커리 등 디자인 문제만 담당하고 모든 법적인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한책임 아닙니까? 그 무한책임에서 벗어나는 이런 방법이 차선책 일 것 같습니다.

**오성훈** : 일단 사후관리 설계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용우**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양순 건축사의 말씀이 맞는 것이, 감리 갔다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거는 감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법적인 조사검사업무지, 조사검사업무를 왜 우리가 안고서 계속 법적인 책임을 지느냐 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니까 떼어서 그거 아니면 공무원한테 위탁받은 건축사가 본인이 아님 다른 사람이 하고, 건축사는 순수하게 건축에 관한 일만 하자 이거죠. 왜 법적으로 이런 걸 건축사가 안고서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하냐 이거죠. 그것은 감리 업무가 아니죠.

**전영철** : 이용우 건축사의 그 이야기는 너무 쉽게 그렇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예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대한민국 건축사들

업무 영역이 이만큼 확보가 됐는데, ‘우린 이만큼만 할 테니 이건 다른데 가서 줘라’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해요.

**박경립** :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계자가 완성이 될 때까지 관여하지 않는 제도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있으면서 못 들어가게 하는 제도는 잘못 된 거니까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열어놔서 건축사의 선택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성훈** : 김일환 과장 말씀 듣고 마무리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설계자가 감리단계까지 갈 수 있는 타당성이 계속 논의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후관리 설계와 관련된 내용들 즉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규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 쪽에 포함 되느냐 혹은 감리 쪽에 30%든 20%든 책정이 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방법이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논의된 다른 이슈 중 하나인 감리와 설계가 분리된 이유에 관한 겁니다. 즉 설계하자에 대한 책임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공제조합이나 건축법에 되어있는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보완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일단 그 정도로 인식을 같이 했단 생각이 들고, 김일환 과장 말씀 한번 들어보죠.

**김일환** : 기본적으로 사후 디자인 감리 등 건축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을 감안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셨던 디자인감리와 같은 경우도 여기 오신 분들이 상당한 수준이고 시공사를 끌고 갈 만한 능력을 갖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 하실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통계자료에 보면 50% ~ 60%는 극히 소규모이고 업무량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하위 20~30%는 거의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업무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즉 모든 건축사분들의 업무역량이나 스타일이 같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감리제도가 왜 분리되었고 현재와 같이 되었는 가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표하신 자료 중에 82쪽을 보면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이나 감리주체에 건축사가 들어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80~90년대 까지는 모든 감리를 건축사가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행했던 건축사 감리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리는 종전에 건축사법에 의하여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선 분양제도에 의하여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는 어차피 치고 빠지는 식으로 운영하였고, 건축사도 상대적으로 충실히 못한 감리를 수행하는 데다 건설기술관리법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이 맞물려 본의 아니게 감리회사

에서 감리를 수행하게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왜 현재와 같은 제도가 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야 효율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화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업무분화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전기공사와 소방감리는 별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통신, 기계설비, 구조, 지반도 별도 발주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현실도 감안해서 감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설계 감리 또는 사후디자인 감리와 같이 추가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용미** : 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민간시장하고 공공시장하고 분리해서 말씀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소규모 민간시장에서 일하는 60~70% 건축사들은 설계와 감리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공공건축에서의 디자인감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이고…

**김일환** :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공공민간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건축사사무소 개설하신 분들이 한 만분쯤 되요. 만 명쯤 되는데 과연 그 분들 중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레벨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김용미** : 그렇기 때문에 공공영역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영역이 건축계를 선도해야한다고 보고 일단 공공영역에서부터 디자인감리제도나 사후설계감리업무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영역에서도 아파트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봐줘야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양순** :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하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건축사 책임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제일 억울한 사항이 그런 것들인데, 독립기념관도 그렇고 삼풍사고도 그렇고, 건축주가 돈에 눈이 멀어서 감리비를 안주고 도장을 찍으라 하니까 찍은 거지, 건축사가 돈을 잔뜩 받고서 기술자를 안 내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 건축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몰매를 맞는 것입니다. 민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G20정상 회의에 의장국일 정도면 정말 이제 안전을 떠나서 문화를 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안전하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컬러를 칠하더라도 어떤 정도의 컬러를

칠해야 되느냐. 이용락 부회장은 음악을 잘 아시니까, 저희자는 자신이 작곡한 악보의 '강하게'나 '여리게'를 보고도 조금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여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디자인 감리도 똑같은 이 야기거든요? 라움미술관 공사 시 검은색 외관을 페인트로 칠하지 말고, 콘크리트 자체를 검정으로 만들라고 설계자가 요구했어요. 온갖 실패 끝에, 4개월 만에 성공했습니다. 건축사가 하는 감리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저리가고 말이죠, 뭐 높이가 1cm가 크니 뭐가 잘못 됐느냐, 이런 문제를 따지고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최동규** : 오늘 주제는 공공건물의 설계와 감리의 분리라고 생각하셔야 되요. 보니까 여기서는 민간영역도 공공영역도 아니고, 민간 영역 중에서도 커다란 것은 잘 되요. 이런 소형건축들, 예전에 2천 제곱미터 이하 건축에서 감리를 분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일부 건축사들이 원하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용미** :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공공영역에서.

**최동규** : 예, 공공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잘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형이 잘하면 민간은 뒤따라가는 것이고,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오섬훈 좌장이 정리하시고 끝내세요.

**오섬훈** : 하여튼 전체 논의 중심에 설계감리의 연속성에 대한 필요성과 소위 디자인감리라는 사후관리 설계의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공공영역 부분이 먼저 선도가 되어야 민간 등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영철** : 그런데 그 전에 이런 논의가 있었을 경우에 이게 우리 건축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나하면, 이런 논의를 하고 그에 대한 리포트가 나와서 발표가 되면 당연히 알아서 공무원들이나 국가에서 그 정보를 받고, 뭐 이렇게 수정이나 정책에 반영시켜 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김일환 과장이 말씀 하셨듯이, 그릇에 담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설계 감리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꼭 그릇에 담아서 정식으로 국가에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정리 하겠습니다.

**최동규** : 12월이 되면 건축사지가 500호가 되고 또 제 편찬위원회 임기 중에 그런 일을 맡게 돼서 과거 40몇 년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계경기 분야는 제가 요약(Abstract)을 하고, 또 감리분야는 오섬훈 건축사가 요약을 하면 될 것이고, 나중에 그 원고를 보면서 내용 중에 정확하지 않은 단어라든지 이런 것은 고칠 수 있도록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좌담회 내용들이 건축사들이나 건축 관계자들이 볼 때 생산적인 좌담회가 되었다고 생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양순 건축사 (토론자)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G20정상 회의에 의장국일 정도면 정말 이제 안전을 떠나서 문화를 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안전하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컬러를 칠하더라도 어떤 정도의 컬러를